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 및 지원〉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19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고령 ·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 및 지원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3.
3. 회 부 일 : 2026.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Ⅲ. 검토의견

1. 고령·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 촉진 및 지원

개정안은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7(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참여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동농업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 생산비용 절감, 품질 제고, 농가소득 향상 등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이는 계획적인 생산을 통해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농기계의 공

1) 「농어업경영체법」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할 수 있다.

동이용 및 농자재 공동구입 등을 통해 경영비 절감이 가능한 공동농업 경영(공동영농)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으로 신설되었음.²⁾

그런데, 고령화 및 영세화되고 있는 농촌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령농업인과 후계인력인 청년농업인을 공동농업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만한 유인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농업경영체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고령농업인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농업생산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의 경우 안정적인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해 농업 진입 유인이 낮으므로, 이들을 공동영농에 적극 참여시켜 농업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000612호) 검토보고서 참조

3)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공동영농모델 확대 방안 연구」, 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10., p60-61, p170-172 등 참조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거나 그 범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 확산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개요 】

□ 사업목적

- 농지 집적·규모화에 기반해 법인 중심의 전문경영을 실현하는 공동영농법인을 육성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 참여 농가 소득 증대, 청년농 유입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내용) 소규모 농가(경영체)의 조직화 및 농지 집적(임대·출자·위탁)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대규모 시설·장비 지원 등
- (지원자격) 사업 요건*을 충족한 농업법인
 - * ('26) 면적 20ha, 참여농업인(법인 조합원 이외) 5명 이상인 농업법인
- ('26년 예산) 25억 5,500만원*(자치단체 경상 보조)
- * 6개 업체에 1개소당 4억원 지원(국비보조율 50%, 1년차 연부율 40%, 2년간 지원)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⁴⁾

문 의 처
02)6788-5416

4)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